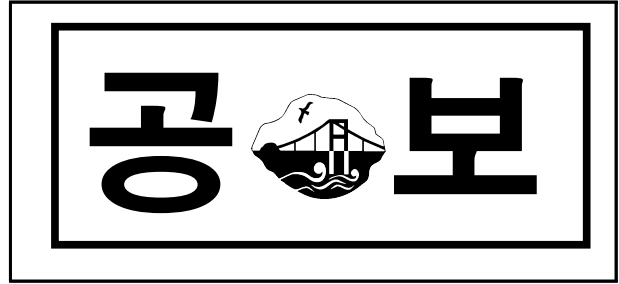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759호 2023. 11. 7.(화)

조 례

| | |
|--|---|
| 남해군 조례 제2705호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 남해군 조례 제2706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 남해군 조례 제2707호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 남해군 조례 제2708호 남해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9 |

규 칙

| | |
|---|----|
| 남해군 규칙 제1227호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4 |
| 남해군 규칙 제1228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17 |

훈 령

| | |
|--|----|
| 남해군 훈령 제359호 어촌계 및 수협소유 어장 면적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 | 21 |
| 남해군 훈령 제360호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 23 |

고 시

| | |
|--|----|
| 남해군 고시 제2023-139호 상주항 어촌뉴딜300사업 부분 시행계획(2차) 고시 | 27 |
| 남해군 고시 제2023-140호 공시송달 공고 | 28 |

공 고

| | |
|---|----|
| 남해군 공고 제2023-1372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 30 |
| 남해군 공고 제2023-1373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 33 |
| 남해군 공고 제2023-1380호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 36 |
| 남해군 공고 제2023-1381호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8 |
| 남해군 공고 제2023-1387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고시 | 41 |
| 남해군 공고 제2023-1402호 마을어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 43 |
| 남해군 공고 제2023-1408호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 44 |
| 남해군 공고 제2023-1411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7 |

| | | | | | | | | | |
|-----|--|--|--|--|--|--|--|--|--|
| 회 략 | | | | | | | | | |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705호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1월 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을 “남해군” 으로, “군수” 를 “남해군수” 로 한다.

제2조 중 “군이”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중 “군내” 를 각각 “남해군 내”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22명” 을 “11명” 으로, “구성한다” 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군수가” 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수산·관광·스포츠·지역경제” 를 “농정유통·관광·스포츠·지역경제” 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06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1월 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을 “제출 또는 발의·제안되는” 으로, “순감소액을 추계(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한” 을 “순감소액(이하 “비용” 이라 한다)을 추계한”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 또는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 이라 한다)” 을 “비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지 제2호서식)” 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발의” 를 “제출 또는 발의·제안”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를 “업무 소관 집행부서에서”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나. 비용 발생 요인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 구 분 | | 0000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
| 총 소요액 | | | | | |
| 00사업 | | | | | |
| 00사업 | | | | | |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기금, 특별회계)로 편성

○ 예산담당부서 협의 【0000과-000(. .)호】

3. 기타사항 : 제0회 000 위원회 심의 완료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천원)

| 구분 | | 1차년도 (0000년) | 2차년도 (0000년) | 3차년도 (0000년) | 4차년도 (0000년) | 5차년도 (0000년) | 계 |
|-------------------------|-------|-----------------|-----------------|-----------------|-----------------|-----------------|---|
| 세 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원조달 | |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보조금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 | 지방세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지방채 | | | | | | | |
| 기 금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5. 작성자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11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남해군 조례 제2707호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1월 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08호

남해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11월 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명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임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선임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한다.
-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⑧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및 간사가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안 첨부자료)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서면질의 및 답변의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의결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27호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3년 11월 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후단 중 “통합브랜드심의위원회(분과)” 를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위원회” 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분과위원회” 를 “군수” 로 한다.

-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 또는 서면” 을 “서면” 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예 비 심 사 조 사 보 고 서

1. 신청내용

| | | | | |
|------|-----------|------|-------|---|
| 신청인 | 단체명 | | 참여농가수 | 호 |
|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생산계획 | 품목 (품종) | 생산기간 | 출하기간 | |
| | 재배면적 | | 생산계획량 | |
| | 포장(공장)소재지 | | | |

2. 심사결과

| 분야 | 항목 | 조사내용 (우수-9, 양호-7, 보통-5) |
|-----------|---|----------------------------|
| 가. 일반여건 | 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전년도 생산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 |
| 나. 생산여건 | 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 |
| 다. 품질관리여건 | 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 | |
| 계 | 10개항목 | 점 |
| 주거래사항 |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 | |

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0 0 0 (인)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남해군 규칙 제1228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3년 11월 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수급자 또는” 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를 “18세 이상이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중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를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4 중 전산란을 삭제하고, 해양수산란, 항공란, 조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
|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
|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

| | | | | |
|-----|------|--|--|--|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
|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
| | 정 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 | | | |
|-----|-----|--|--|---|
| 조 리 | 조 리 |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북어)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북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북어) |
|-----|-----|--|--|---|

별표 5의2 중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 데 이 터 |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별표 7의4 중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 데 이 터 |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

별표 18 중 ⑥투자유치(0.7점), ⑦격무부서근무(1점)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⑥ 투 자 유 치 (0.7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및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점 : 500억원 이상 투자유치 - 0.5점 : 300억원 이상 투자유치 - 0.3점 :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 0.2점 : 50억원 이상 투자유치 - 0.1점 : 20억원 이상 투자유치 ○ 적용 : 투자사업의 실행가능성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서 핵심기여자, 팀장, 보조자에 대하여 배점의 만점 인정 |
|---------------------------|--|

| | |
|-------------------------------------|---|
| <p>⑦ 격 무 서 근 무 (1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격무지정업무 6개월 이상 근무자 ○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 1점 - 2년6개월 이상 ~ 3년 미만 : 0.8점 - 2년 이상 ~ 2년6개월 미만 : 0.6점 - 1년6개월 이상 ~ 2년 미만 : 0.4점 - 1년 이상 ~ 1년6개월 미만 : 0.2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0.1점 ○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서 업무 담당자에 적용 - 인사이동으로 격무담당에 중단없이 연속해서 근무할 경우, 이전 격무담당 근무실적을 인정하여 가산점 부여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59호

**어촌계 및 수협소유 어장 면적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어촌계 및 수협소유 어장 면적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발령한다.

2023년 11월 7일

남 해 군 수

**어촌계 및 수협소유 어장 면적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

어촌계 및 수협소유 어장 면적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 소유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군 관내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소유할 수 있는 면허 면적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를 말한다.
3.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4. “양식장”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남해군 관내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1.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면허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30조에 따른 면허

제4조(면허의 결격사유) 남해군수는 관내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미 취득한 어장 및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신청한 어장 및 양식장 면적의 합이 350ha를 초과하는 경우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면허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남해군 훈령 제360호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발령한다.

2023년 11월 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근로자(이하 “근로자” 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 소속 근로자
2. 도급·용역·위탁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준수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
-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②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립한 안전보건계획에 대하여 지도·조언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제목 “(안전검사)”를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안전검사를”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검사를”로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제32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요인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감소대책을 이행한다.

제38조의2(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제38조의3(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군수는 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이 될 때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무재해운동) 군수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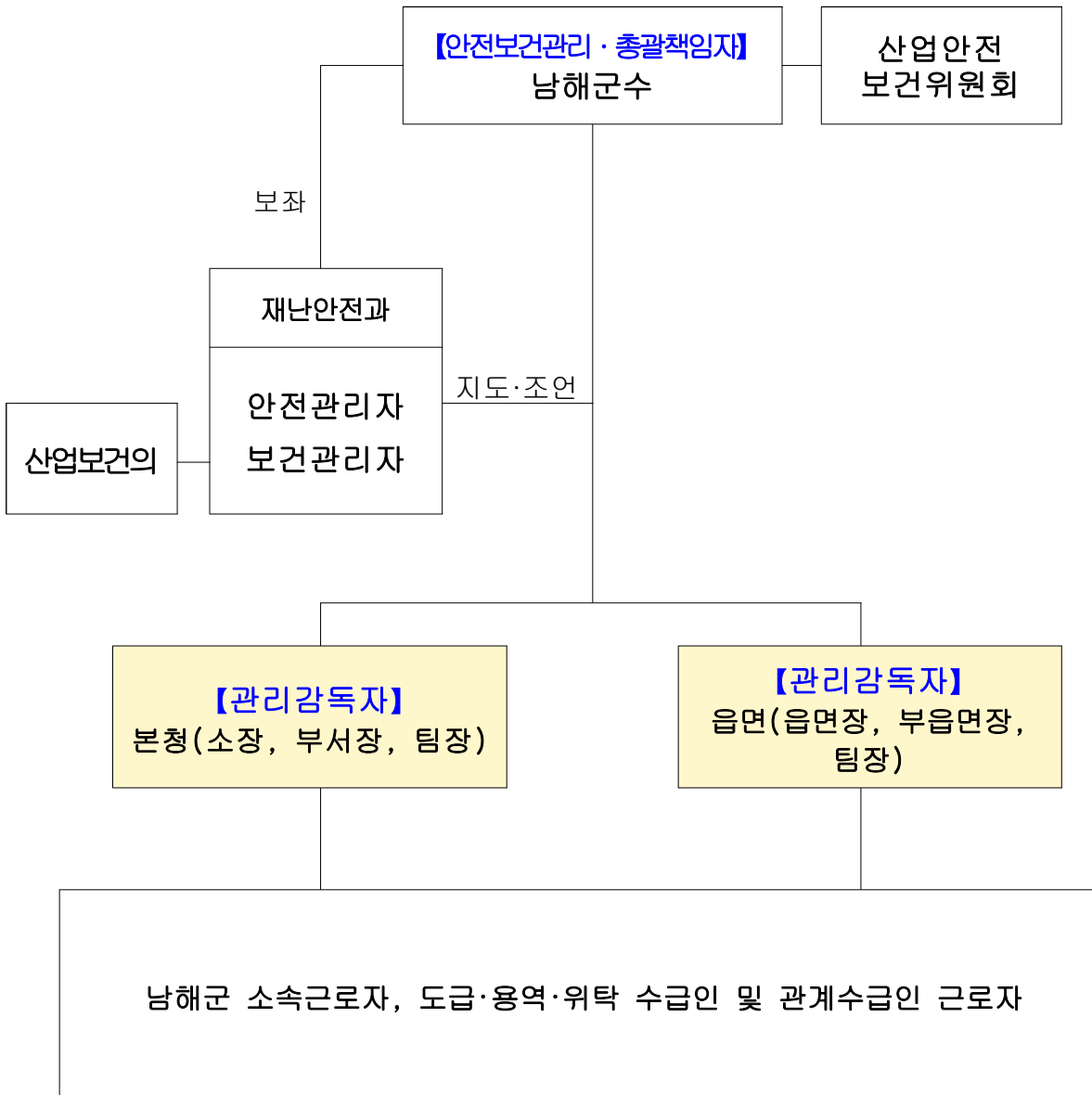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139호

상주항 어촌뉴딜300사업 부분 시행계획(2차) 고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및 「어촌·어항법」에 의하여 상주항 어촌뉴딜300사업 부분 시행계획(2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상주항 어촌뉴딜300
- 2. 사업 목적 : 항을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 3.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상주항 일원
- 4. 사업 기간 : 2021년 ~ 2023년
- 5. 총 사업비 : 9,527 (국비6,489, 지방비2,781, 자부담257)
- 6.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 7. 사업 개요(특화사업)
 - 해양레저스테이션 조성 1식, 주차장 전광판 설치 1식
-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해양발전과(어항관리팀, 055-860-3076)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3-140호

공시송달 공고

「미조 망산 봉수대 주변정비사업」 관련 토지사용동의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지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행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시송달 공고함

2023년 10월 27일

남 해 군 수

- 1. 공고대상 : 14명(붙임내역 참조)
- 2. 공고기간 : 2023. 10. 27. ~ 11. 25.(30일간)
-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4. 사업대행자 : 남해군 문화체육과
- 5. 대행사유 :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주소지불명, 부재 등)
- 6.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내에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재팀(☎055-860-86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발송결과(공시송달용)

주소

| 성명 | 등기번호 | 주소 | 배달결과 |
|-----|---------------|--|------------------|
| 강* | 10948484241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30, 우성아파트 3-705 (대치동, 우성1차아파트) |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
| 최*수 | 10948484241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1, 선경아파트 10-204 (대치동, 선경아파트) |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
| 한*수 | 109484842412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201-10, 2동 304호 (대부북동) |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 최*신 | 10948484241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77 | 반송불능 (주소불명) |
| 최*룡 | 10948484241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77 | 반송불능 (주소불명) |
| 김*배 | 1094848424123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88-27, 225-1604 (북변동, 풍년마을신일아파트) |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
| 김*준 | 1094848424124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34, 102-805 (목동, 목동성원아파트) |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 김*아 | 1094848424123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88-27, 225-1604 (북변동, 풍년마을신일아파트) |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
| 전*중 | 10948484241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47, 210동 203호 (가양동, 가양2단지아파트) | 반송불능 (배달안료) |
| 탄*희 | 109484842412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88, 502-401 (이매동, 이매촌동부코오롱아파트) |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
| 박*삼 | 109484842412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96, 한화꿈에그린아파트 906-1704 (논현동, 예코메트로 9블록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
| 김*균 | 1094848424128 |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441, 1004동 801호 (동패동, 책향기마을10단지동문굿모닝힐) | 배달안료 |
| 김*오 | 10948484241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음길 78 (영선동4가) |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 이*필 | 109484842413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3-5 개나리아파트, 12동 306호 | 반송불능 (주소불명)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1372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경상남도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 토지 등에 대한 관계 조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3일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
- 2.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94번지 일원
- 3. 사업규모 : L=342m, B=10.8m
- 4. 시 행 자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장
- 5.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남해군청 게시판에 게재하고, 우리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6. 토 지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94번지 일원

7.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 일체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로 보상 협의 가능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사업시행자 선정1인, 남해군 선정 1인)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23.10.23. ~ 2023.11.7.(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자 확인 | 전화번호 (주택 및 휴대폰) | 비고 |
|-------|------|----------|-----|----|--------|-----------------|----|
| | |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소유자 확인란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타인의 서명은 불가합니다.
- ※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용 지 조 서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 지목 | 대장면적(평인면적) | | 소 유 자 | | 소유권이외의 권리 | | | 비고 |
|----|-----|--------|--------|----|------------|--------|----------|------|-----------|-----|---------|----|
| | | 분할전 | 분할후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관 리 내 용 | |
| 1 | 진동리 | 296-5 | | 도 | 3954 | 1108 | 경상남도 | | | | | |
| 2 | 진동리 | 296-4 | 296-10 | 임 | 915 | 242 | 경상남도 | | | | | |
| 3 | 진동리 | 495-10 | 495-25 | 임 | 2081 | 182 | 경상남도 | | | | | |
| 4 | 진동리 | 295-1 | | 도 | 1282 | 889 | 남해군 | | | | | |
| 5 | 진동리 | 1385 | 1385-1 | 도 | 519 | 29.7 | 경상남도 | | | | | |
| 6 | 진동리 | 1353 | 1353-1 | 임 | 97160 | 272.9 | 경상남도 | | | | | |
| 7 | 진동리 | 495-11 | | 도 | 2297 | 840 | 남해군 | | | | | |
| 8 | 진동리 | 495-20 | 495-27 | 임 | 487 | 109 | 윤계완 외 2인 | 사정토지 | | | | |
| 9 | 진동리 | 495-17 | 495-26 | 임 | 160 | 45 | 경상남도 | | | | | |
| 10 | 진동리 | 신168-4 | | 도 | 5122 | 29 | (국)국토교통부 | | | | | |
| 11 | 진동리 | 495-6 | 495-24 | 임 | 139 | 8 | 경상남도 | | | | | |
| 12 | 진동리 | 1240 | | 도 | 403 | 217 | (국)국토교통부 | | | | | |
| 13 | 진동리 | 495-13 | | 도 | 612 | 245 | 남해군 | | | | | |
| 14 | 진동리 | 494-1 | | 도 | 4795 | 1143 | 남해군 | | | | | |
| 15 | 진동리 | 509-9 | | 임 | 1280 | 18 | 경상남도 | | | | | |
| 16 | 진동리 | 495-2 | 495-23 | 임 | 1299 | 2 | 경상남도 | | | | | |
| 17 | 진동리 | 494 | 494-2 | 전 | 1270 | 142 | 경상남도 | | | | | |
| 18 | 진동리 | 496 | 496-1 | 전 | 139 | 9 | 경상남도 | | | | | |
| 19 | 진동리 | 509-2 | 509-10 | 임 | 4147 | 11 | 경상남도 | | | | | |
| 합계 | | | | | 128.061 | 5541.6 | | | | | | |

남해군 공고 제2023-1373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남해군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 토지 등에 대한 관계 조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3일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 2. 위 치 :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108-2번지 일원
- 3. 사업규모 : L=1,142m, (급경사지 정비 L=300m)
- 4. 시 행 자 : 남해군수
- 5.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남해군청 게시판에 게재하고, 우리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6. 토 지 :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108-2 일원

7. 물 권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 일체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로 보상 협의 가능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사업시행자 선정1인, 남해군 선정 1인)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23.10.23. ~ 2023.11.7.(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자 확인 |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 비고 |
|-------|------|----------|-----|----|--------|-----------------|----|
| | |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소유자 확인란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타인의 서명은 불가합니다.
- ※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편입용지조서

| 일련 번호 | 소재지 | | | 지번 (편입) | 지목 | 공부 면적 (㎡) | 편입 면적 (㎡) | 공유지분 | 소유자 | | 비고 |
|----------|-----|----|----|------------|----|-----------------|-----------------|------|-----|-------------------------|---------------------|
| | 군 | 면 | 리 | | | | | | 성명 | 주소 | |
| 1 | 남해 | 남면 | 상가 | 산 92-10 | 임 | 39 | 39 | | 김0영 | 경남 남해군 남해를 북면리 000-0 | 남해군 남해를 화진로122번길*** |
| 2 | 남해 | 남면 | 상가 | 산 91-1 | 임 | 11 | 11 | | 김0기 | 경남 남해군 서면 대정리 | 세주소없음 |
| 3 | 남해 | 서면 | 대정 | 산 161-5 | 임 | 104 | 104 | | 남해군 | | |
| 4 | 남해 | 서면 | 대정 | 산 162-6 | 임 | 214 | 214 | | 남해군 | | |
| 5 | 남해 | 서면 | 대정 | 산 160-9 | 임 | 352 | 352 | | 남해군 | | |
| 계 | | | | | | 720 | 720 | | | | |

남해군 공고 제2023-1380호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남 해 군 수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 면허번호 | 양식업의종류 (양식업방법) | 양식물 | 어장 위치 | 면허 면적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남해양식 제621호 | 패류양식 (바닥식) | 새꼬막 | 설천 진목 | 50000 | 2023.11.04 2033.11.03 (10년) |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591번길 15-4 | 박익수 외2 (서연일, 임권택) | 232호 재개발 |

※ '23/24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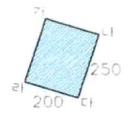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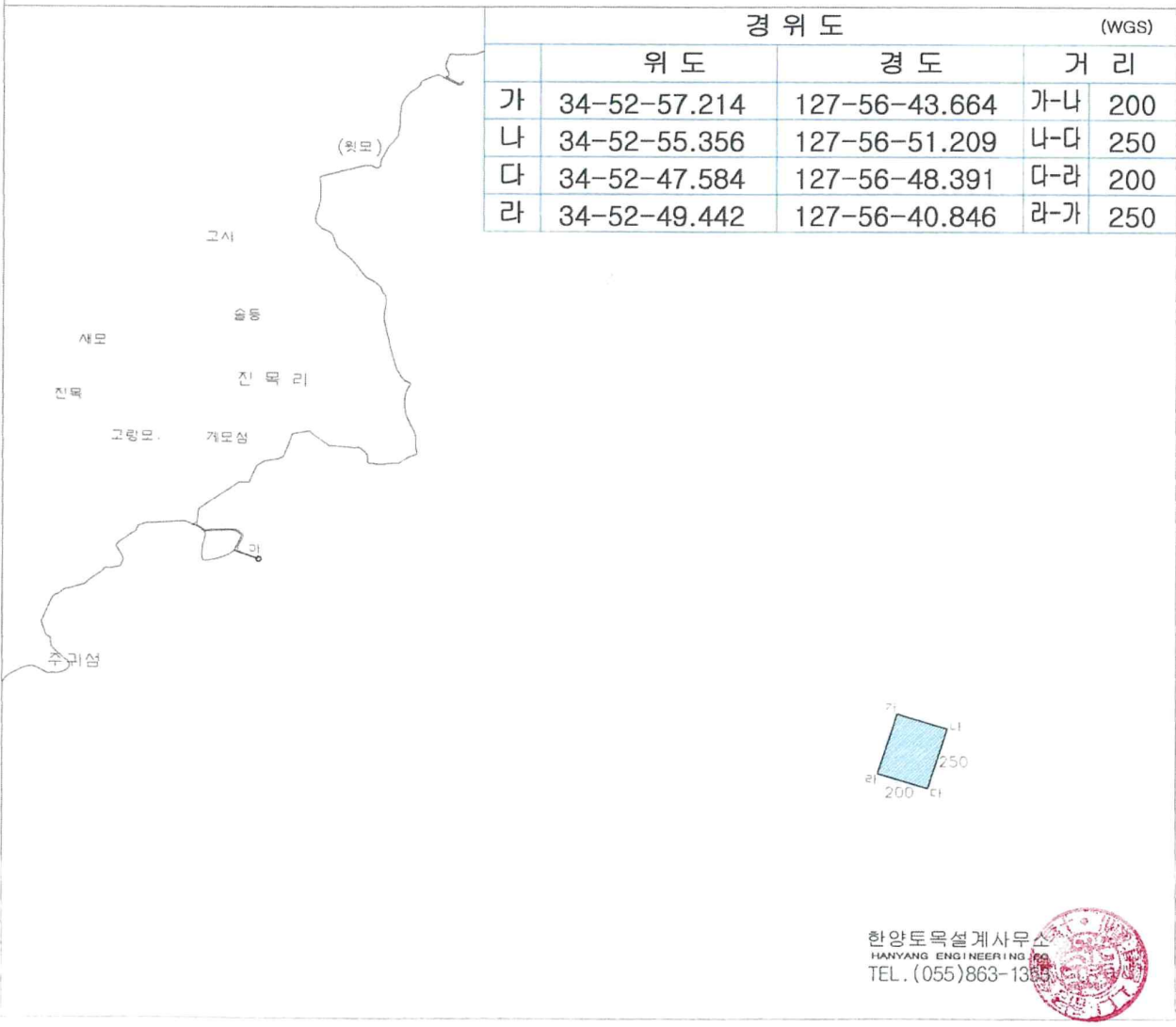
○ 양식업 면허 소멸사항

| 면허번호 | 양식업의종류 (양식업방법) | 양식물 | 어장 위치 | 면허 면적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남해양식 제232호 | 패류양식 (바닥식) | 새꼬막 | 설천 진목 | 50000 | 2013.11.04 2023.11.03 |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591번길 15-4 | 박익수 외2 (서연일, 임권택) | |

남해양식 제 621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마) N 34-53-16.40, E 127-55-06.67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축 척 : $\frac{1}{25,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88

남해군 공고 제2023-1381호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안 제1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목적
 - 나. 안 제3조 보조금 지원 사항 및 보조금 지원 제반 절차 수행에 관한 근거 규정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한 : 2023년 11월 1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17,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전화 055-860-3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회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남해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과 관련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활동과 관련한 사업
4. 안전교육 활동과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포상)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387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를 위한 고시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남 해 군 수

1. 목 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정비사업 완료된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하여 해제 고시하고자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 해제 고시 대상

| 시설명 | 구분 | 시군 | 읍면동 | 리 | 지번 | 연장(M) | 폭(M) | 해제사유 | 비고 (지정일) |
|------|-----|-----|-----|-----|----------|-------|------|------------------------|---------------|
| 금전2교 | 소교량 | 남해군 | 상주면 | 상주리 | 1274-1 앞 | 11.4 | 7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위험요소 해소 | 2016. 12. 16. |

3. 지정 및 해제 근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4. 지정권자 : 남해군수

5. 열람 장소 : 남해군수 재난안전과

6. 행정예고

가. 공람기간 : 2023년 10월 25일 ~ 2023년 11월 03일(20일간)

나. 공람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055-860-3296)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5일 ~ 2023년 11월 03일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화접수(055-860-3296)

다. 제 출 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라. 내 용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당 토지주,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작성

※ 제출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 으로 간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055-860-3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3-1402호

마을어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마을어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남 해 군 수

○ 마을어업면허 처분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 종류 | 포획물 | 어장 위치 | 면허 면적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남해마을 제315호 | 마을어업 | 정착성 수산동식물 | 설천 덕신리 | 123,300 | 2023.10.29. ~ 2033.10.28.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 월곡어촌계 | 제138호 재개발 |

※ '23/ '24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마을어업면허 소멸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 종류 | 양식물 | 어장 위치 | 면허 면적 (㎡) | 마을어업 면허기간 |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면허기간 | 유효기간 연장 | 주 소 | 성 명 | |
| 남해마을 제138호 | 마을어업 | 정착성 수산 동식물 | 설천 덕신리 | 123,300 | 2003.10.29. ~ 2013.10.28. | 2013.10.29. ~ 2023.10.28.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 월곡어촌계 |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

남해군 공고 제2023-1408호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남 해 군 수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 면허번호 | 양식업의종류 (양식업방법) | 양식물 | 어장 위치 | 면허 면적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남해양식 제622호 | 패류양식 (바다식) | 새꼬막 | 설천 진목 | 50,000 | 2023.11.06 2033.11.05 (10년) |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88, 102동 504호(자은동, 대동아파트) | 김의기 외1 (박향순) | 233호 재개발 |
| 남해양식 제623호 | 패류양식 (바다식) | 새꼬막 | 설천 진목 | 30,000 | 2023.11.06 2033.11.05 (10년) |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15-1 | 이군찬 외1 (문창율) | 234호 재개발 |

※ '23/24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업 면허 소멸사항

| 면허번호 | 양식업의종류 (양식업방법) | 양식물 | 어장 위치 | 면허 면적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남해양식 제233호 | 패류양식 (바다식) | 새꼬막 | 설천 진목 | 50,000 | 2013.11.06 2023.11.05 |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88, 102동 504호(자은동, 대동아파트) | 김의기 외1 (박향순) | |
| 남해양식 제234호 | 패류양식 (바다식) | 새꼬막 | 설천 진목 | 30,000 | 2013.11.06 2023.11.05 |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15-1 | 이군찬 외1 (문창율) | |

남해양식 제 622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마) N 34-53-16.40, E 127-55-06.67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축척 : $\frac{1}{25,000}$



| 경 위 도 | | | (WGS) | |
|-------|--------------|---------------|-------|-----|
| | 위도 | 경도 | 거 리 | |
| 가 | 34-53-01.676 | 127-56-27.515 | 가-나 | 200 |
| 나 | 34-52-59.886 | 127-56-35.085 | 나-다 | 250 |
| 다 | 34-52-52.089 | 127-56-32.369 | 다-라 | 200 |
| 라 | 34-52-53.879 | 127-56-24.799 | 라-가 | 250 |

한양토목설계사주
HANYANG ENGINEERING
TEL. (055)863-1368



남해항 제 623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닥식양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지선
-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마) N 34-53-30.20, E 127-55-30.34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30,000 m²



남해군 공고 제2023-1411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 지방보조금 목적외 사용금지 표지판 운영

3.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같은 조 제3항)
- 나. 지방보조금 목적외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안 제15조 ~ 제20조)
 -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대상, 표지판의 종류, 설치 시기, 관리 주체, 비용의 부담, 관리 감독 및 평가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1월 3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예산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65,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예산팀(전화 055-860-30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법 제25조” 를 “법 제36조의3”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7호) 중 “위원회” 를 “군수”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중복수급,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별 심의
- 8.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 ③ 군수는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별로 군비 500만원 이상이 포함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군수와 협의한 사업
- 3.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③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16조(표지판의 종류 등) 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장비·물품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 ② 표지판의 형식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③ 표지판의 규격 등은 별표 2에 따르며,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표지판의 설치 위치) ①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함께 명시할 수 있다.

- ② 시설을 건립하거나 장비 또는 물품을 구입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을 준공하거나 장비 또는 물품 구입을 완료하였을 때 시설·장비·물품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장비·물품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운영비를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원내용에 맞게 표지판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8조(표지판의 관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관리자가 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이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한다.

제20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지방보조금지원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운영표지판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보조금교부기관 : 남해군

보조 사업명 :

보 조 금 액 : (국비 도비 군비)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이 시설은 남해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지방보조금 표지판의 규격 등(제16조제3항 관련)

| 종 류 | 규격(단위 : cm) | | 설치높이 (단위 : m) | 재 질 | 비고 |
|--------------|---------------------------|--------------------------|-----------------------------------|--------------------------------------|-----------------------|
| | 최 대 | 최 소 | | | |
| 지방보조금 표지판 |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 금속·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식별이 용이 하게 작성 |

※ 표지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곳의 특성에 따라 군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